##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58

발의연월일: 2022. 8. 3.

발 의 자:서영교・설 훈・양기대

윤준병 • 이개호 • 이용빈

임오경 · 전혜숙 · 최인호

홍정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 이상일 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심지어, 고가인 1주택자와비교해 2주택자가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 1억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 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또한,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첫째,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려 함. 둘째,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거주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 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배제 하려 함. 셋째,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하려 함. 넷째,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 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 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려 함.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고령층 · 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3(납세의무자의 기준) ①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 1. 1세대 1주택자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1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 의 공시가격 금액이 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제7조의4(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규주택
-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주택으로 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등록문화재인 서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자가아닌 다른 주택
- 4.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농 어촌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으로 한정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기준이나 보유기간 계산 및 주택 처분 미이행 등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5(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관한 과세특례)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일 것
- 3.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 4.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는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 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 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하거나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는 납부가 유예된 세액에 대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일 또는 제3항에 따른 징수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7조의3(납세의무자의 기준) ①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세대 1주택자 : 국내에 소 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 오 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 제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u>&lt;신 설&gt;</u>	<u>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u> 제7조의4(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규주택
-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
   는 주택
-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등록문화재인 서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및 종종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자가 아닌 다른 주택

4.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 하는 1세대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농어촌주택 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법인 또 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 세표준에 같은 법 제9조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기준이나 보유기간 계산 및 주택 처분 미이행 등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에 관한 과세특례) ① 관할세 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신 설>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 택자일 것
-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 <u>상일 것</u>
- 3.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 4.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초과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 인)는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 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납세 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

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 가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세 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 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 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납부유예 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

   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하거나 제3 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는 납부가 유예된 세액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일 또는 제3항에 따 른 징수일까지의 일수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납부유예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